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4
----------	-----

2024. 6. 10.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5. 30. 노애자 의원 등 9명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0.)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노애자 의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기본계획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교육과정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위원과 강남구의회의원당선인<sup>1)</sup>이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 임.

##### 나. 검토 내용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며,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양한 직종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하여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서울시 10개 자치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용어 표기에 따름.

- 특히 2023. 9. 14.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6조<sup>2)</sup>에서는 소속의  
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sup>3)</sup>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  
역구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개편되었음. 따라서 **지방의  
회의원과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담보하  
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 으  
로 당선 후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취득되고, 이에 따라 임기 개시 후  
에는 재산등록, 겸직 신고 및 직무의 성실 수행 의무 등의 법적 의  
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반면, 당선인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현행법상 법적 의무와 권  
한이 존재하지 않고, 의원이 임기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당선  
무효가 될 때는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
-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2  
항<sup>4)</sup>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2)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  
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  
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3) 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편,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지원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비(205) 중 205-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205-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지방의회 제7기부터 제9기까지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초선의원 평균 비율이 광역의회의 경우 66%, 기초의회의 경우 53%를 상회함.

**<전국 지방의회의원 선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원정수	초선	2선	3선	4선 이상
제9기 (2022.7~ 2026.6)	광역	872	594 (68.1)	215 (24.7)	47 (5.4)	16 (1.8)
	기초	2,987	1,666 (55.8)	861 (28.9)	313 (10.5)	147 (4.9)
제8기 (2018.7~ 2022.6)	광역	829	615 (74.2)	136 (16.4)	68 (8.2)	10 (1.2)
	기초	2,927	1,717 (58.7)	721 (24.6)	340 (11.6)	149 (5.0)
제7기 (2014.7~ 2018.6)	광역	794	433 (54.5)	271 (34.1)	71 (8.9)	19 (2.4)
	기초	2,898	1,460 (50.4)	916 (31.6)	376 (13)	146 (5)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3

- 강남구의회의 제7대부터 제9대까지의 선수현황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의 비율은 50%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선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원정수	초선	2선	3선	4선 이상
제9대	23명	11명(48%)	10명(43%)	2명(9%)	-
제8대	23명	16명(70%)	4명(17%)	3명(13%)	-
제7대	21명	9명(43%)	8명(38%)	4명(19%)	-

자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사무국

## ○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안의 입법 목적을 명시한 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sup>5)</sup>,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sup>6)7)</sup>. 지방의회 소속 의원(의원당선인 포함)들이 본연의 직무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기본원칙)**에서는 교육연수 과정의 적극 발굴·시행, 교육연수의 내용, 교육연수 선택권 제공에 대한 선언적·보충적인 규정으로 보임. 다만, 제3항 중 ‘자기개발’은 ‘자기계발(自己啓發)’로 용어 사용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3조(정의)제1호**에서는 ‘의원’을 정의한 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소속 의원 외에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90조의2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이 조례안을 적용하는 대상을 명시한 것임. **제2호**에서는 ‘교육연수’를 정의한 바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주체는 의회 또는 외부기관이고, 교육연수의 목적은 의원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7.4.개정, 2023.7.10.시행) (약칭: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법」 (2024.1.9.개정, 2024.5.17.시행)

###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공직선거법」 (2024.3.8.개정, 2024.3.8.시행)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교육연수의 범위는 국내 교육에 한정 명시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적용범위)**에서는 의원(의원당선인 포함)에게 적용되고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나 ‘(적용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5조(기본계획)**에서는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것은 의원임기와 맞춰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하도록 한 것은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 **안 제6조(시행계획)**에서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 **안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의회비 중 의원역량개발비를 설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교육·공공위탁교육·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임. **제2항**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연수 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질 높은 교육연수를 수행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제3항**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실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4항**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의장이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하여 적정한 연수교육인지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최종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 의원은 적정한 연수교육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고 의장은 교육연수의 타당성·적합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8조(예산지원 등)제1항**에서는 의원이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연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2항**에서는 교육과정 실시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예산의 부당 사용을 방지한다는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3항**에서는 교육연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은 반환하도록 하여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9조(의회규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sup>8)</sup>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한 것임.
- **안 부칙**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준비기간을 충분히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임.

####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특히, 우리 의회가 역대 의원당선인 중 초선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실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한 조례안이므로 의원입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8) 「지방자치법」 (2024.1.9.개정, 2024.5.17.시행)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364

제안연월일: 2024. 5. 30.

제 안 자: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의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조문에 사용된 조사나 단어를 어법에 맞게 바로잡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며, 조 제목 표기 방식을 입안 기준대로 정비함.

## 2. 수정주요내용

- 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안 제2조)
- 나. 조 제목 표기 방식 수정(안 제4조)
- 다. 예산지원 등에 관한 증빙서류 용어 수정(안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내용이”를 “내용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기개발”을 “자기계발”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실시”를 “관련”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기본원칙) ① (생략)</p> <p>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u>내용이</u>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u>자기개발</u>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4조(<u>적용범위</u>) ①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예산지원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u>실시</u>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p>	<p>제2조(기본원칙)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 ----- ----- <u>내용을</u> ----- -----.</p> <p>③ ----- ----- <u>자기개발</u> ----- ----- -----.</p> <p>제4조(<u>적용 범위</u>) 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제8조(예산지원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 <u>관련</u> ----- -----</p>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  
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  
류로 본다.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강남구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교육·공공위탁교육·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④ 삭제 <2005. 8. 4.>

⑤ 삭제 <2005. 8. 4.>

⑥ 삭제 <2005. 8. 4.>

⑦ 삭제 <2005. 8. 4.>

⑧ 삭제 <2005. 8. 4.>

⑨ 삭제 <2005. 8. 4.>

[제목개정 2005. 8. 4.]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 14.>

[본조신설 2005. 8. 4.]

##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4
----------	-----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노애자·이동호·손민기·  
김광심·오은누리·이성수·  
김진경·박다미·안지연 의원  
(이상9인)

## 1. 제안이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나. 기본계획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다. 교육과정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강남구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교육·공공위탁교육·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④ 삭제 <2005. 8. 4.>

⑤ 삭제 <2005. 8. 4.>

⑥ 삭제 <2005. 8. 4.>

⑦ 삭제 <2005. 8. 4.>

⑧ 삭제 <2005. 8. 4.>

⑨ 삭제 <2005. 8. 4.>

[제목개정 2005. 8. 4.]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 14.>

[본조신설 2005. 8. 4.]

##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